

#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기관 [ ]지정 취소 통보서 [ ]업무정지

1. 지정번호:
2. 기관·단체명:
3. 대표자 성명:
4. 주소:

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1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2제2항에 따라 위 품질인증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의 [ ] 지정 취소 또는 [ ] 업무정지를 통보합니다.

1. 처분 내용:
2. 처분 사유:

년 월 일

산림청장

직인